## 고

## ◉ 국토교통부고시제2022 - 호

##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(2차)변경승인 (정읍수성 A-1BL)

『공공주택 특별법』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읍수성 A-1BL 공공주택건설(행복주택)사업계획을 (2차)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2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

- 1. 사 업 명 : 정읍수성 A-1BL 공공주택(행복주택) 건설사업
- 2. 사업시행자

구분	기 정	변경	비고
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	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전라북도 정읍시 시장 유진섭	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전라북도 정읍시 시장 이학수	
주 소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 전라북도 정읍시 충정로 234	좌동	

3. 사업개요

구 분	기 정	변 경	비고
가. 대지위치	전라북도 정읍시 수성동 524-25, 524-20번지	좌동	-
나. 사업면적	3,390.00m <sup>2</sup>	좌동	-
다. 대지면적	3,390.00m <sup>2</sup>	좌동	-
라. 연 면 적	9,648.77m <sup>2</sup>	9,339.94	감308.83
마. 사업규모	아파트 1개동 (행복주택 98호, 지하1층~지상18층) 및 부대·복리시설, 업무시설(1~3층)	좌동	-
바. 구 조	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	좌동	_
사. 사 업 비	23,587,826천원 (주택도시기금 4,991,140천원)	좌동	_
아. 사업기간	2020. 12. ~ 2023. 04.	2020. 12. ~ 2023. 12.	증8개월

- 4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중의 소재지·지번·면적·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·주소 등을 기재한 서류 : 변경없음
- 5.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
  - 가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고시 : 변경없음
  - 나.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: 변경없음
- 6. 기 타 : 관계 도서는 정읍시 도시재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(063-445-6154)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.